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엠텍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POSCO M-TECH CO.,LTD.로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각종 포장자재의 생산 및 판매
2. 철강제품의 포장작업에 관한 사업
3. 비철금속, 합금철 제조 및 판매, 도매업
4. 철강제품의 가공 및 판매, 도매업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2 조에 정한 업무
6. 산업용 기계설비의 제작 및 부품의 가공판매
7. 수출입업
8. 부동산 임대업
9. 전문건설업 및 전기공사업에 관한 사업
10. 광물의 가공, 판매 및 자원개발 사업
11.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12.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13.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14. 도금업
15.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제 3 조【본점 소재지】

- ① 본 회사의 본점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둔다.
- 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 지점, 공장, 출장소, 사무소, 영업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회사의 존립기간】

2001.3.21 삭제

제 5 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poscomtech.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 2 장 주식과 주권

제 6 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 천만주로 한다.

제 7 조 [1 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 1 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

제 8 조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는 설립 시에 30,000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본 회사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등 상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배정한 신주의 납입 기일의 2 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우선 발행할 수 있다.
5.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주식의 소각】

- ① 본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 13 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③ 본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4 조【명의개서 등】

- ① 본 회사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 금 취급하게 한다.
- ② 제 1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5 조<삭제>

제 16 조<삭제>

제 17 조<삭제>

제 18 조【주주명부의 폐쇄】

-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일부터 1 월 31 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 ②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 주간 전에 공고한 후 3 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채

제19조【사채의 발행】

본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의 1 【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가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전환가액은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발행가액은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 20 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그 밖의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 목적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 못한다.

③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④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⑤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정관 제 33 조의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경상북도 포항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하여진 사항을 통지, 공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총회의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 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24 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 25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본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총회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인인 주주는 소속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 26 조【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

제27조【이사의 수】

본 회사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제28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규정의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제29조【사외이사의 자격】

사외이사는 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회계분야 또는 공공부문에서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30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31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 선임한다. 그러나 법정원수에 달하고 업무 집행상 지장이 없는 때에는 보결선임을 유보 또는 차 회 정기 주주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 ②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수가 법률이 요구하는 수를 미달하게 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사내이사에게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의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직무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책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의 보수】

- ① 이사의 보수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세부 운영기준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및 감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③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비등기임원】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정사항 및 경영상 중요사항의 집행을 위하여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
- ② 비등기임원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다만,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직책에 비등기임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비등기임원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며, 그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및 감사 퇴직금지급 규정의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퇴직금 지급기준에 준한다.
- ④ 비등기임원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 ⑤ 비등기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0조의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37조【이사의 보상 및 책임 감경】

본 회사는 이사가 본 회사의 자격으로 어떠한 소송, 제소, 변론의 당사자가 되어 본 회사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 손실 및 채무에 대하여 상법규정의 범위 내에서 본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권한】

이사회는 법령과 본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본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39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 외의 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도 대표이사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 전일까지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의장】

-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33조 2항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이사회 정족수와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및 감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에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의사록】

이사회에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에 요령 및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고문 및 촉탁】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명으로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 44 조【감사】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그 중 1명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제 45 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정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 46 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일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한다.

제 47 조【감사의 보선】

감사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 44 조에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8 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 3 항에 따른 청구를 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이사회가 소집되지 아니하면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 34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9 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50 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지급액은 이사회 결의로써 정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및 감사 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7 장 계 산

제 51 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 월 1 일로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하여 연도 말에 결산한다.

제 52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 ①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재무상태표
 - 2. 손익계산서
 - 3.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로서 이사회가 결정하는 서류
 - 4. 연결재무제표
- 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후 정기주주총회일 1 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점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상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53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 54 조[잉여금의 처분]

본 회사의 잉여금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다.

1. 이익준비금 :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10 이상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원 퇴직공로금
5. 기타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5 조[이익배당]

- ① 이익배당은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 말일 현재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 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전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제 56 조[중간 배당]

회사는 연 1 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